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국 제 조 세 조 정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(Administrative Guidance)을 반영하여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명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대상·기한 명확화(안 제111조 제1항제5호)

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대상 및 적용에 따른 대상조세 납부대상에 관한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, 해당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내 주주구성기업에서 피지배외국법인으로의 대상조세 배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9. 12. ~ 10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적격지분보유자가”를 “주주구성기업”으로, “배분”을 “배분(다만, 나목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주주구성기업”을 “주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대한 적용례)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1조(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) ① 법 제6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.	제111조(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<u>적격지분보유자가</u> 납부하는 대상조세: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 외국법인(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에 배분	5. ----- ----- -- <u>주주구성기업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배분(다만, 나목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)</u>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전 세계에 소재하는 피지배 외국법인의 소유지분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과 결손을 모두 통산하고 피지배 외국법인이 납부하는 세액 (해당 <u>주주구성기업의</u> 소재지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 중 주주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정하는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세율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주주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제도(이하 이 장에서 “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”라 한다)	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주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6. · 7. (생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661